

「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」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년 9월 25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5년 10월 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5년 10월 13일 상정 ·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올림픽체육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평창군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,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등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업무 전문화를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스포츠마케팅, 스포츠대회, 전지훈련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5조)
-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지원 내용 규정(안 제6조)
-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정유진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「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」 검토보고서 1부.

2. 「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」 1부.

「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」

첨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안자 : 평창군수
- 제안일자 : 2025. 9. 25.
- 회부일자 : 2025. 10. 13.
- 상정일자 : 2024. 10. 13.

2. 제안이유

-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평창군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,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등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업무 전문화를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스포츠마케팅, 스포츠대회, 전지훈련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5조)
-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지원 내용 규정(안 제6조)

-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(안 제7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체육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마케팅 활용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사무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. 또한 제117조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스포츠 전지훈련 및 도 단위 이상 대회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마케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2조(정의)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.
- 안 제4조(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의 수립)에서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.

- 안 제5조(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에서 스포츠 마케팅 심의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, 「평창군 체육진흥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6조(전지훈련 선수단 지원)에서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7조(사무의 위탁)에서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평창군 체육회 또는 관련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참여 인구 증가로 스포츠마케팅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,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,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스포츠마케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.
- 이에 따라 스포츠 전지훈련 및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지원, 나아가 전문화를 위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불임 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· 관리
 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5. 교육 · 체육 · 문화 · 예술의 진흥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· 검사 · 검정 ·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·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·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스포츠기본법

제7조(스포츠 정책 수립·시행의 기본원칙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
2.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
3.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것
4.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
5. 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
6.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
7. 스포츠의 국제 교류 · 협력을 증진할 것

스포츠산업진흥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48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9. 25.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평창군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,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등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업무 전문화를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스포츠마케팅, 스포츠대회, 전지훈련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5조)
- 다.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지원 내용 규정(안 제6조)
- 라.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1) 입법예고(2025. 8. 22. ~ 9. 1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평창군 공고 제2025-1265호, 올림픽체육과-8077(2025. 8. 22.)호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13197(2025. 8. 25.)호]
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13197(2025. 8. 25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 반영[가족복지과-32004(2025. 8. 28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14602(2025. 9. 16.)호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14834(2025. 9. 19.)호]

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포츠대회”란 평창군이 직접 주최하거나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에서 정의하는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 또는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.
2. “전지훈련”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·향상하기 위하여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이외 지역의 프로구단, 실업팀, 학교, 단체 등이 군에 방문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며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스포츠마케팅”이란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의 유치·지원을 통해 군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·시행 시 선수단의 안전, 인권 등의 보호를

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지원 계

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
2. 종목별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
3. 전지훈련 시설 현황 및 관리 계획
4.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홍보
5.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제5조(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

팅의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스포츠마케팅
추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스포츠마케팅 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
2.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평창군 체육진흥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평
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.

제6조(전지훈련 선수단 지원) 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예산의 범

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「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
 2. 선수단 숙식비 및 의료비 지원
 3. 선수단 관내 체험활동비 지원
 4. 선수단 수송차량 지원
5.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7조(사무의 위탁)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창군체육회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군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스포츠마케팅 지원 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「평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① 위원회의 운영, 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및 「평창군 체육진흥 조례」를 따른다.

② 위탁사무의 운영, 집행, 감독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 [법률 제19951호]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①~② 생략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 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생략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[조례 제2850호]

제4조(대상사무)

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
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② 생략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 : 사무위탁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업무 위탁금 발생

-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비(숙식비, 체험활동비 등) 및 도 단위 이상 대회 운영비

나. 관련조문 :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

제6조(전지훈련 선수단 지원)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사무의 위탁)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창군체육회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.

2. 비용 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위탁사무의 범위는 보조사업 및 기금으로 추진하는 도 단위 이상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사무 중 일부로 함 ※ 추진방식 변경(보조사업→위탁사무)

나. 추계 결과

○ 26년 예산소요액

구 분	사업명	소요금액(천원)	비 고
합 계		1,698,300	
대회 개최	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외 25개 대회	1,318,000	
전지훈련 유 치	전지훈련팀 유치 지원	350,000	
	전지훈련 유치 운영비	30,000	

다. 재원조달 방안 : 평창군 자체수입(군비) : 1,698,300천원

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관광경제국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
연락처	(033)330-2018

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 :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6년)	2차년도 (2027년)	3차년도 (2028년)	4차년도 (2029년)	5차년도 (2030년)	계
세 입						
세 출	1,698,300	1,750,000	1,750,000	1,800,000	1,800,000	8,798,300
민간위탁금	1,698,300	1,750,000	1,750,000	1,800,000	1,800,000	8,798,300
재원 조달	1,698,300	1,750,000	1,750,000	1,800,000	1,800,000	8,798,300
의 존 재 원	소 계					
자 체 수 입	보조금	1,698,300	1,750,000	1,750,000	1,800,000	1,800,000
	지방교부세					
자 기 금	소 계					
	지방세					
	세외수입					
	지방교부세					
	지방채					
	기 금					
	공기업					
	특별회계					
	민간자본					
	해외자본					
	기타					
	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